

# 공동주택 하자 판정, 신속 · 공정한 조정

-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및 하자판정기준 적용 -

하자 여부를 판정할 정부의 매뉴얼이 신설되고 분쟁조정 실무를 전담처리할 사무국도 출범하여, 진단기관 별로 제각각인 공동주택의 하자 판정이 공정해지고 분쟁조정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18일 정창수 제1차관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분쟁조정 업무 추진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편집자 주]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배경

최근 급증하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지난 해 3월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도 개설했다.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사무국에는 총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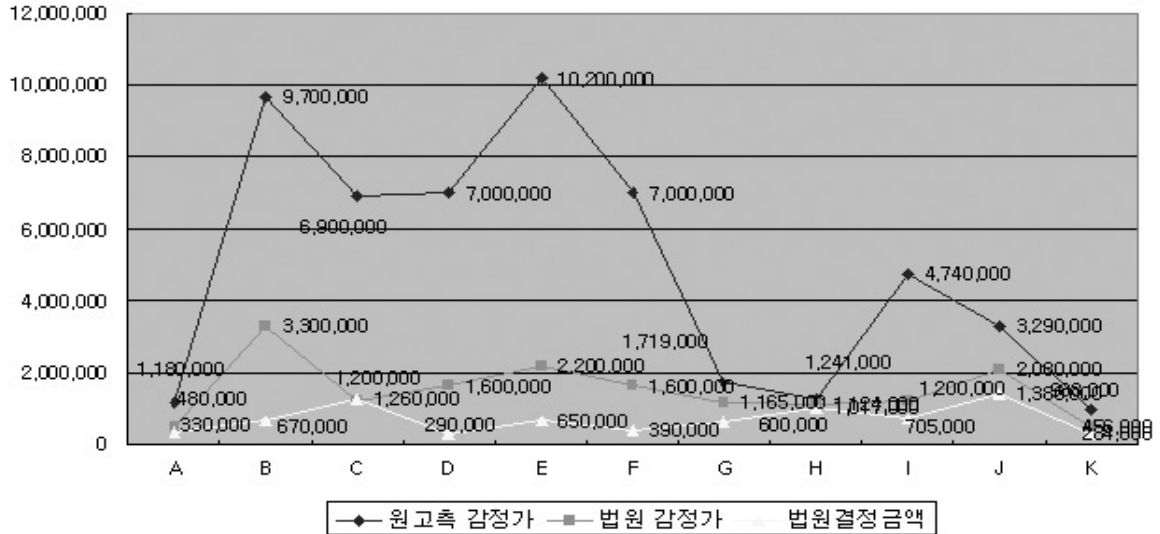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가와 주택업계, 입주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무국 기능	위원회 및 홈페이지 운영, 상담 및 요건심사, 보수공사비 산정 등
사무국 주소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2 동영센터럴 타워 206호
전화번호	031-428-1833
홈페이지	www.adc.go.kr

##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 마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하자 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진단기관에 따라 하자판정 결과의 편차가 크므로 분쟁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사례별 원고감정가, 법원감정가, 법원결정금액의 차이 비교 (단위 :천원)



\* 공동주택의 하자발생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대한건축학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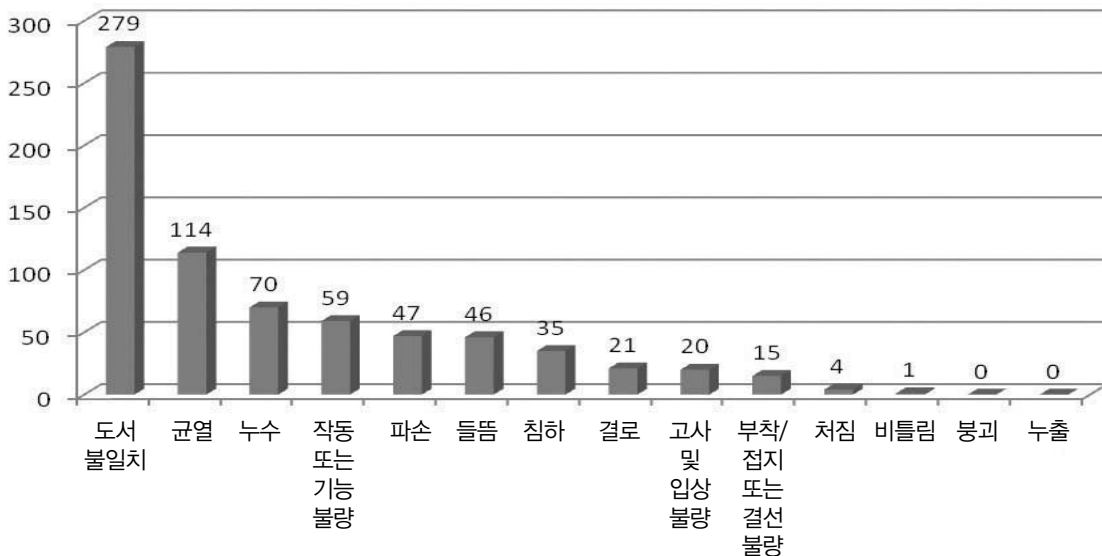
〈사례B, 사례E의 경우 원고감정가 대비 법원결정금의 차이가 약 15배〉

자판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가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하

자판정기준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6대 하자유형(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전기·통신설비, 도서 불일치)에 대하여 하자판정 기준을

▼ 공동주택 하자 판례분석 결과 (2009년 기준 계류사건 600건)



우선 마련하여 적용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기계설비는 배관누수 및 배수불량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난방하자 기준온도 및 용량부족, 설계수압 이하의 경로 등으로 구체화 했다.

하자판정기준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 절차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 절차는 당사자(입주자 또는 사업자) 일방이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031-428-1833)」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피신청인에게 조정의 취지를 알리고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할 경우 조정이 개시된다.

조정대상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한 조정과 조

#### ▼ 하자판정 기준 매뉴얼 주요 내용

하자유형	기준	주요 내용																												
균열	균열폭, 부식환경, 피복두께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내구성, 방수성, 미관상 균열로 분류하여 기준 제시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균열의 구분</th> <th colspan="4">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th> </tr> <tr> <th>건조 환경</th> <th>습윤 환경</th> <th>부식성 환경</th> <th>고부식성 환경</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구조부위</td> <td>0.4mm와</td> <td>0.3mm와</td> <td>0.3mm와</td> <td>0.3mm와</td> </tr> <tr> <td>0.006×피복두께 중 큰값</td> <td>0.005×피복두께 중 큰값</td> <td>0.004×피복두께 중 큰값</td> <td>0.0035×피복두께 중 큰값</td> </tr> <tr> <td>방수성 (물탱크 등)</td> <td colspan="4">0.1mm 이상 균열</td> </tr> <tr> <td>미관상</td> <td colspan="2">외부 0.1mm 이상 균열</td> <td colspan="2">내부 0.2mm 이상 균열</td> </tr> </tbody> </table> <p>*피복두께 :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 두께(mm)</p>	균열의 구분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구조부위	0.4mm와	0.3mm와	0.3mm와	0.3mm와	0.006×피복두께 중 큰값	0.005×피복두께 중 큰값	0.004×피복두께 중 큰값	0.0035×피복두께 중 큰값	방수성 (물탱크 등)	0.1mm 이상 균열				미관상	외부 0.1mm 이상 균열		내부 0.2mm 이상 균열	
균열의 구분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구조부위	0.4mm와	0.3mm와	0.3mm와	0.3mm와																										
	0.006×피복두께 중 큰값	0.005×피복두께 중 큰값	0.004×피복두께 중 큰값	0.0035×피복두께 중 큰값																										
방수성 (물탱크 등)	0.1mm 이상 균열																													
미관상	외부 0.1mm 이상 균열		내부 0.2mm 이상 균열																											
결로	세대 벽체, 발코니, 창 및 문 등과 지하주차장 및 기타 비난방 사용공간으로 구분하여 기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로 발생 및 결로 발생 흔적 육안 관측시 하자</li> <li>• 단열 설계가 법적기준 미만일 경우 하자</li> <li>• 실제 표면온도가 설계 표면온도 보다 낮은 경우 하자</li> </ul>																												
누수	구조체, 방수층, 외부창호, 상시누수, 일시누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안, 코어시험, 리트머스지시험 등을 이용하여 누수 판정</li> </ul>																												
기계설비	배관누수, 배수불량, 난방 불량, 수압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관누수 및 배수불량 육안 확인시 하자</li> <li>• 난방하자 기준온도 및 용량부족시 하자</li> <li>• 설계수압 이하시 하자</li> </ul>																												
전기·통신 설비	배선, 조명, 차단기 불량 등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선은 누전, 단락, 단선, 절연저항 불량시 하자</li> <li>• 조명은 시설 및 점등 불량시 하자</li> <li>• 차단기는 오작동, 미작동, 기능상실시 하자</li> </ul>																												
도서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시공부위를 설계도서 내용과 비교하여 미시공, 시공누락, 자재규격 미달시 하자로 판정</li> </ul>																												

정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된 서면 위주로 약식조정(당사자 미출석)을, 중요사건인 경우는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한 정식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정은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내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하자감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서 제외된다.

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발생되고, 거부하면 조정은 중지된다(당사자 소송 가능).

국토해양부는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하자소송은 물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하자기획 소송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계설비 하자의 특성과 주요 하자 선정

### 1) 기계설비 하자의 특성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대부분 2년으로 짧음(일부

### 3) 기계설비 하자의 판정 기준

하자 판정 기준		관련근거
배관 누수	배관재 및 배관 부속류(각종 피팅류, 밸브류, 플랜지 등 연결기구 포함) 누수 발생 시 하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제18조
배수불량	배수 역류 및 배수 불가 시 배수계통 악취 발생 시 통기관 및 트랩 미설치 시(도면,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단, 사용 부주의 및 관리 불량에 따른 배수불량 제외	
난방 불량	- 법적 설계 외기온도 조건에서 세대 건구온도 20℃ 이상 유지 불가 단, 외기온도가 설계기준 이외의 온도시 온도 보정 또는 방열량 산정으로 검토	

\* 개별난방 및 지역난방의 경우 난방요금이 동일단지·동일평형·유사한 난방운영 조건(사용기간/실내온도)의 다른 세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50% 이상) 하자판정의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

공정 3년)

- 초기 시공상의 하자가 대부분임(노후화에 의한 하자는 매뉴얼에서 제외)
- 하자의 대부분이 건설사 자체 점검 및 입주자 사전 점검시 발견되어 조치됨
- 하자 여부의 판정 및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음

### 2) 주요 하자의 선정

- 하자 여부 및 하자의 책임소재가 명확한 하자 제외
- 하자 발생시 입주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하자 발생원인이 다양하거나 복합적인 대상 선정

#### ① 주요 하자

- 배관누수
- 배수불량
- 난방 불량
- 수압부족

하자 판정 기준		관련근거																							
난방 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도조절 불가(세대 주 보일러 장치와 연동된 개별보일러의 운전제어 혹은 중앙열원의 세대 주 밸브 조절 여부로 판정)</li> <li>- 실별 자동온도조절 불가(단, 실별온도조절 센서 및 밸브 설치 경우에만 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난방의 경우 단지 전체의 세대 난방요금이 인근 지역 단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50% 이상) 하자판정의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li> <li>* 난방시 바닥표면온도를 30℃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하자판정의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단, 외기온도가 설계 기준 온도보다 낮을 경우 예외)</li> <li>* 난방시 온수공급 온도가 35℃ 이상 유지되지 못할 경우 하자판정의 참고자료로 사용 가능</li> </ul>																							
수압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워기 수압 0.07MPa(0.7kg f/m<sup>2</sup>) 이하</li> <li>- 기타 일반 수전류 수압 0.03MPa(0.3 kg f/m<sup>2</sup>) 이하</li> <li>- 설계도서 상의 위생기구 중 수압 이상을 요구하는 기구 설치 시에는 자재 시방 혹은 일반적 기준의 수압 이하인 경우(예 : 해바라기 샤워기 등) 단, 입주자가 위생기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기구</th> <th>필요압력(MPa/m<sup>2</sup>)</th> </tr> </thead> <tbody> <tr> <td>일반 수도꼭지</td> <td>0.03{0.3}</td> </tr> <tr> <td>대변기 세척밸브</td> <td>-</td> </tr> <tr> <td>일반 대변기용</td> <td>0.07{0.7}</td> </tr> <tr> <td>블로우아웃 대변기용</td> <td>0.1{1.0}</td> </tr> <tr> <td>소변기 세척밸브</td> <td>-</td> </tr> <tr> <td>벽걸이형 소변기</td> <td>0.03{0.3}</td> </tr> <tr> <td>벽걸이형 스톨형</td> <td>0.05{0.5}</td> </tr> <tr> <td>소톨형 변기용</td> <td>0.08{0.8}</td> </tr> <tr> <td>샤워</td> <td>0.07{0.7}</td> </tr> <tr> <td>가스순간온수기</td> <td>0.04~0.08{0.4~0.8}</td> </tr> </tbody> </table>		기구	필요압력(MPa/m <sup>2</sup> )	일반 수도꼭지	0.03{0.3}	대변기 세척밸브	-	일반 대변기용	0.07{0.7}	블로우아웃 대변기용	0.1{1.0}	소변기 세척밸브	-	벽걸이형 소변기	0.03{0.3}	벽걸이형 스톨형	0.05{0.5}	소톨형 변기용	0.08{0.8}	샤워	0.07{0.7}	가스순간온수기	0.04~0.08{0.4~0.8}
기구	필요압력(MPa/m <sup>2</sup> )																								
일반 수도꼭지	0.03{0.3}																								
대변기 세척밸브	-																								
일반 대변기용	0.07{0.7}																								
블로우아웃 대변기용	0.1{1.0}																								
소변기 세척밸브	-																								
벽걸이형 소변기	0.03{0.3}																								
벽걸이형 스톨형	0.05{0.5}																								
소톨형 변기용	0.08{0.8}																								
샤워	0.07{0.7}																								
가스순간온수기	0.04~0.08{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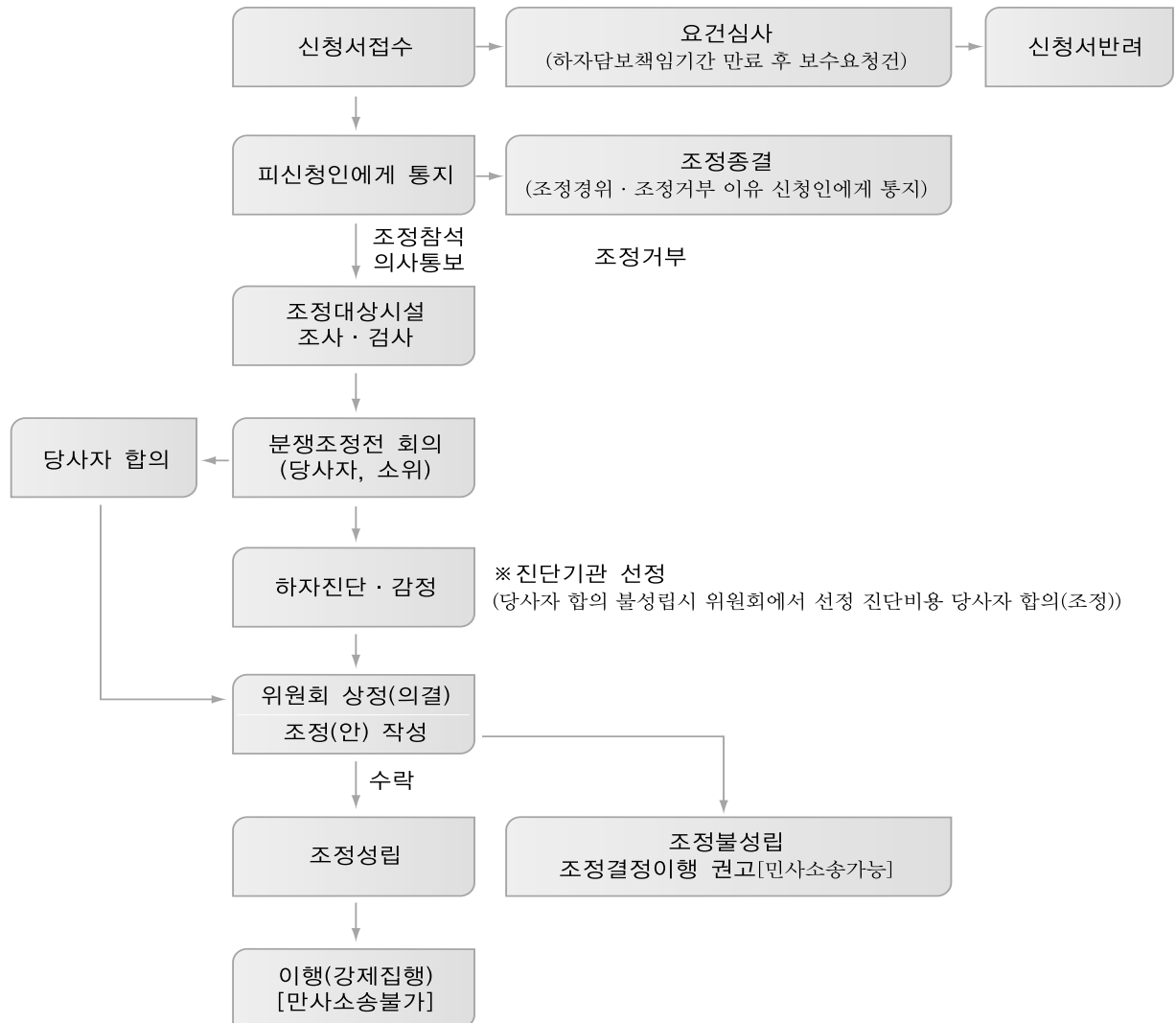
4) 배관누수 하자시 조치 방안

배관누수 원인 및 현상	누수발생 주요 부위	조치방안	기타
과대한 배관 압력	일반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 정밀 재검토</li> <li>- 펌프 압력 축소(필요시 교체)</li> </ul>	전문가 자문 필요
배관제 자체 누수	일반/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배관 교체 시공</li> <li>- 영구적 누수방지 조치</li> </ul>	
배관 접속부 누수	일반/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속부 재시공(부속류 자재 불량이 아닌 경우)</li> <li>- 재시공 후에도 누수 발생시 접속 부속류 교체 시공</li> </ul>	
배관재 및 부속품 등의 종류, 규격, 품질 불량	일반/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와 동일 자재로 교체 시공</li> </ul>	
열신축의 배려 불량 (신축이음 불량)	일반/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 재검토 후 설계상 하자의 경우 설계변경 및 재시공</li> <li>- 설계하자가 아닌 경우 재시공 실시(필요시 자재 교체)</li> </ul>	

배관누수 원인 및 현상	누수발생 주요 부위	조치방안	기타
배관 구배 불량	배수배관	-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배관구배 수정 - 배관구배 확보 불가시 배관경로 변경	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경우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설비공학회)에 따름
배관 지지, 고정방법 불량	일반/배수	- 시방서 기준에 맞도록 시공	

## 하자판정 절차

### 1) 하자심사 · 분쟁조정 절차



## 2) 하자판정 절차 및 방법

### ① 하자심사·분쟁조정 요건 심사

- 신청사건의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와 그 외 심사·조정  
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심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보수 요청 건인지 확인

### ② 하자진단 및 감정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③ 하자 판정

- 하자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하자판정 기준에  
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은 위원회 합의에 의해 결정
-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판정 결과표 작성
  - ▲ 하자신청내용 기재
  - ▲ 하자분류 기재
  - ▲ 하자여부 및 현장정밀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현

## 장정밀조사 결과 기재

### ④ 하자진단·감정 절차

-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평가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
  - ▲ 사전조사  
신청서, 설계도서, 시공도서, 준공도서 기타 관  
련자료 검토
  - ▲ 현장 정밀조사  
하자상태, 시공상태, 유지관리 이력 검토·확인
  - ▲ 조치방안 검토  
현장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방법  
결정
  - ▲ 보고서 작성  
현장정밀조사 보고서는 하자판단업무에 효율적  
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  
을 중심으로 작성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근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이나 보다 체계적  
이고 기술적인 분야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분쟁조  
정을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 운영과 사무처리 업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  
습니다.

주택법 제46조의2(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설  
치)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 책임 및 하  
자 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위해 설치되어  
신속,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저감 및 국민 불편을 해  
소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이므로 소송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①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매우 경제적입니다.
  - ② 관련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③ 분쟁조정 의 문제해결의 그 선택권이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습니다.
  - ④ 분쟁해결방식이 양 당사자의 엄격한 대립구조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치열한 주장과 엄격한 입증의 아니라 완화된 대립구조를 취함과 동시에 비공개적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은 무엇인지요?

-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민법 제 732조)은 일단 성립되면 구 채권 · 채무관계가 소멸하고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창설적 효과) 착오등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일 반계약보다는 효력이 강합니다.
 

민사조정법상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는 사건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사건은 무엇인지요?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중 건축분야, 기계 · 전기분야, 토목 · 조경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분쟁조정 소요기간

분쟁조정에 따른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 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사건의 규모 및 특징에 따라 사건소요기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 전화로 분쟁조정 신청 가능 여부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하실 경우 간단한 안내나 상담이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사건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조정신청시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자료 없이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화통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및 조정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Q&A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요?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및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사무국에서 요건심사를 거치게 되며, 이 절차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신청한 건, 분쟁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미비 건 등의 경우 신청서가 반려됩니다.

요건심사를 거친 후 피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며 피신청인이 조정참석의사를 통보해 온 후 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 등 사무국의 전문적인 인력을 동원해 사건의 조사·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조사를 거쳐 분쟁조정 전 회의에서 양 당사자 간에 사건이 합의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기 전에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하자진단 감정 실시 후 위원회에 사건이 상정될 경우 변호사, 대학교수, 소비자단체 대표, 업계 대표 등의 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당사자의 진술 및 사실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하게 되며, 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받게 되면 15일 이내에 수락의사를 표시한 수락서에 기명날인하여 조정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지녀 민사소송이 불가하며 조정안 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며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 처리비용

분쟁조정에 따른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 조정신청 등에 쓰이는 각 호의 조정비용은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부담합니다.

※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2항(조정등의 신청 등)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 [본조신설 2009.3.19]

## 분쟁조정 결정안은 우편배달

분쟁조정결정서를 우편으로 배달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정결정안은 배달증명서로 발송되며 수취한 날로부터 15일 동안 수락할 수 있는 기간이 양 당사자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분쟁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서에 첨부되어있는 수락서 1부를 우편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만일 분쟁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 할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15일이 경과하면 분쟁조정 결정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